

#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4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9. .  
제출자 홍원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후점검 규정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·관리되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명칭 변경(안 제7조)
- 다. 지도점검 시기 추가(안 제13조)
- 라.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의2)
- 마. 점검결과의 반영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1. 9. . ~ 2021. 9. .
    - 나) 예고결과 :
  - 2) 부서협의
    - 가) 협의기간 : 2021. 8. . ~ 2021. 9. .
    - 나) 협의결과 :
  - 3) 관련부서 : 노인장애인과

##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김포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을 “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로, “설치의 사전점검”을 “설치 및 점검”으로, “정함”을 “정하여 김포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지도점검”이란”을 ““사전점검”이란 점검요원이”로, “편의시설의 설치 및 완료되기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하여 편리”를 “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”으로, “하는 것”을 “유도하는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사후점검”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, 파손,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”를 “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지도점검 시기 등)”을 “(지도점검 시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지도점검”을 “사전점검”으로, “준공”을 “사용승인”으로 한다.

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사후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사후점검 등) ① 사후점검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후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후점검요원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사후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·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에는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·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김포시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<u>지도점검</u>”이란 「<u>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</u>」(이하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<u>편의시설의 설치 및 완료되기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 및 점검</u> ----- <u>정하여 김포시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</u>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다음과</u>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사전점검</u>”이란 <u>점검요원이</u>----- ----- ----- -- <u>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</u>----- ----- <u>유도하는 것</u>-----.</p> <p>4. “<u>사후점검</u>”이란 <u>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, 파손,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제7조(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,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3조(지도점검 시기 등) 지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준공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17조(점검결과의 반영) ①·② (생략)

제7조(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 
-----  
-----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도점검 시기) ① 사전점검-----  
-----  
----- 사용승인-----  
-----.

② 사후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사후점검 등) ① 사후점검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후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후점검요원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17조(점검결과의 반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③ 시장은 사후점검결과 편의시설시  
적정 유지·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 
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 
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 
부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  
되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법  
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 시 표본대  
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에는 개  
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 
적정하게 유지·관리되도록 조치하  
여야 한다.